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24153 정정·반론청구
원 고 주식회사 000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유재만, 조상준
피 고 000000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창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소라, 전태구
변 론 종 결 2008. 4. 17.
판 결 선 고 2008. 5. 8.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되는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

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 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 PD의 소비자고 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 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 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 PD의 소비자고 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 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 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황토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7. 10. 5. 22:00경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2. 22:00경 같은 프로그램에서 위 방송보도 후의 정황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2) 방송 보도의 내용

피고는 별지 4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일컫는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부분

피고는 2007. 5. 3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6개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납의 경우 6개사 제품 모두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인 20.0ppm을 초과하였고 비소의 경우 4개사의 제품이 '일반 화장품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였다.

피고는 2007. 8. 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그 중 3개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다시 의뢰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납의 경우 모두 '일반 화장품 기준'인 20.0ppm을 초과하였고 비소의 경우 2개사의 제품이 '일반 화장품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였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피고는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피부 흡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쥐를 상대로 3주 동안 아침, 저녁에 하루 두 번씩 황토팩을 바르고 15분 뒤 닦아내는 방법으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황토팩을 바른 쥐의 피부, 간, 혈액에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 수치가 많이 증가하였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피고가 3개 회사의 황토팩 가루와 자연산 황토에 자석을 대보니 그 중 2개사의 제품만이 자석에 반응하였다. 이는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석에 반응한 황토팩 제품의 경우 황토 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Ball-Mill)이 마모되어 쇳가루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황토에 들어있는 산화철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

라) 가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일부 황토팩 제조 회사가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는 2007. 10.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 중 ①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②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부분, ③ 황토 분쇄 과정에서 쇳가루가 황토 제품에 유입되었다는 부분, ④ 황토팩 제조 회사가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11. 9. '피고는 별지 5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1TV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9. 22:00경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반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4) 피고는 2007. 11. 15.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피해 발생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9,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물과 1:1의 비율로 섞은 크림 상태에서 피부에 도포되므로, 제품 자체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할 때는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려면 피부에 도포하기 직전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반 화장품 기

준'을 적용하여 분말 형태인 황토팩 제품 자체를 검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①의 ㉠ 부분과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중 반론사항 ①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보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일컫는다)에 정해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보도는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기준에 대하여 '화장품 원료 기준'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은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갑3, 14, 15, 20, 을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황토팩 제품 자체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품 원료 기준'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였다거나 황토팩 제품 자체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보다 높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피부 흡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은 사람에 비해 피부흡수율이 현저히 큰 쥐(사람 피부두께의 1/7)를 실험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실험을 근거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①의 ㉠ 부분과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쥐는 피부두께가 사람의 1/7에 불과하여 피부를 통한 중금속 흡수율이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실험에 사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음, 갑1-1, 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한 위 실험은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중요부분은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갑6, 7, 3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섯가루 유입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유입된 섯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산화철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섯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이것이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②와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중 반론사항 ②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 사실,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사실, 자연산 황토도 채취장소에 따라 자성을 띠는 자철석(Fe_3O_4)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산화철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 내지 12, 16, 20, 25, 26, 2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 '섯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Fe_3O_4) 등 산화철임을 알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있다.

라. 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③과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반론사항 ③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853호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5. '피고는 2007. 10. 5. 22:00경 방송 예정인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의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별지 6 방영금지목록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갑2).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정정 및 반론 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

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간접강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정정 및 반론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_____

 판사 이종문 _____

 판사 권기백 _____

<별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

- 000000은 2007. 10. 5.과 2007. 10. 12. 각 방송한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찻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자연산 황토에 포함된 산화철은 자석에 붙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찻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000000은 2007. 10. 12. 방송한 본 프로그램에서 일부 황토팩 제조 회사가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식회사 000이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000000은 2007. 10. 5. 방송한 본 프로그램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000은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크림 형태로 사용할 경우, 자사의 황토팩은 위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